

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44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11.
제 출 자 : 제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조성이 재정형편상 기금출연이 불가능한 상태이며
- 동일한 시책(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)을 충청북도에서 기 시행중에 있고
- 우리 시에서는 상기자금 대출업체에 대하여 연리 2.5%상당의 금액을
추가로 이자보전해 주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음.

2. 주요골자

- 조례폐지

3. 근거법령

- 해당없음

붙 임 : 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

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

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